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104197 임대차보증금

원 고 허○○ (000000-0000000)

서울 양천구 목1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윤평

피 고 김○○ (000000-0000000)

서울 양천구 목1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변 론 종 결 2013. 11. 19.

판 결 선 고 2013. 11. 26.

주 문

- 1. 이 사건 소 중 340,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40,000,000원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15.부터 2012. 4. 14.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3. 1. 9.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2013. 1. 10. 피고에게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파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3. 1. 9.자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3. 1. 10.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민법 제639조, 제635조에 따라 그로부터 1월이 지난 2013. 2. 11.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가 임차보증금 34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 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원고가 향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시이행관계에 기초한 피고의 항변권이소멸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미리 그 이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

의 이 부분 소는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진 후 구체적으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성립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종료 및 그에 따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에 관하여 전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34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원

판사 나원식

판사 강나래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양천구 목동 ○○, ○○-1 목동○○2 제206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40층 업무시설, 판매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1,809.973㎡, 1층 207.500㎡, 2층 1,790.420㎡, 2층 40.919㎡, 2층 34.016㎡, 2층 99.304㎡, 3층 1,429.052㎡, 3층 34.016㎡, 3층 217.431㎡, 3층 내지 19층 각 723.475㎡, 20층 436.275㎡, 20층 74.160 ㎡, 20층 164.249㎡, 21층 내지 40층 723.4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1. 서울 양천구 목동 ○○ 대 10184.6㎡
- 2. 서울 양천구 목동 ○○-1 대 1370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401호 철근콘크리트조 94.387㎡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23889.6분의 17.899. 끝.